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36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어기구 · 조인철 · 김병주  
박용갑 · 박균택 · 임호선  
김태선 · 이개호 · 권향엽  
이상희 · 김주영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있으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제에서 높은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산업을 포함하고 그 조세특례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늘려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철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 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

인공

지능, 철강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